

춘천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35088 판결 [구상금 청구]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나3508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가소3389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1. 14.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가소33894 판결

주문

- 이 사건 소송은 2024. 7. 25.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024. 8. 6. 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正本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은 2023. 9. 20. 선고되었고, 피고는 2023. 10. 5.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023. 10. 14.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24. 4. 25.로 지정하였다. 제1차 변론기일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2024.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출석한 원고는 변론하지 않았다.

다.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24. 5. 23.로 지정하였다. 제2차 변론기일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2024. 5. 3.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출석한 원고는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24. 6. 13.로 지정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위 변론기일을 연기하였다.

마. 이 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을 2024. 7. 25.로 지정하였다. 제4차 변론기일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2024.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출석한 원고는 변론하지 않았다.

바. 피고는 2024. 8. 6., 2024. 8. 21., 2024. 8. 26. 각 이 법원에 변론기일의 지정을 바란다는 취지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24. 10. 17. 진행된 제5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제1, 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여 원고가 모두 변론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뒤 이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제4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원고가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4차 변론기일이 있었던 2024. 7. 25.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24. 7. 25. 항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배성준, 판사 허경은